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및 부과예시

## □ 시설물

###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부담금=	연료사용량(ℓ) ×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 (연료종류별)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실제사용량 × 액체연료환산계수) * 액체연료환산계수 • LNG(Sm) : 1.14 • LPG(kg) : 0.76 • 경유(ℓ) : 1 • 중유(ℓ) : 1.08 • 무연탄, 신탄(kg) : 0.49 • 유연탄(kg) : 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이하 : 13</li> <li>1,000~2,000 : 15</li> <li>2,000~4,000 : 16</li> <li>4,000~6,000 : 18</li> <li>6,000~10,000 : 20</li> <li>1,000~2,000 : 22</li> <li>1,000~2,000 : 24</li> <li>1,000~2,000 : 27</li> <li>600,000초과 : 29</li> </ul>	1.466 (200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LPG:0.16</li> <li>경유 : 0.87(0.2%이하) 1(0.2~0.4%), 1.40(0.4~1%)</li> <li>중유 : 1.62(12%이하) 2.3(1~1.6%), 3.67(1.6~1.4%)</li> <li>무연탄, 신탄, 유연탄 : 3.6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시 : 1.53</li> <li>광역시 : 1.00</li> <li>도청소재지 : 0.97</li> <li>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 0.79</li> <li>기타지역 : 0.40</li> </ul>

- 연료사용량 :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 기준 산정(실제 사용 연료양에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계측기 미설치 및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한 산정불가시 : 연료사용량 관기특부 등에 의거 산정

⇒ 위의 방법에 의한 산정불가시 :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 적용산정(시행규칙 별표5)

※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

###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부담금=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 (연료종류별)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실제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0이하 : 79</li> <li>400~800 : 87</li> <li>800~1,600 : 97</li> <li>1,600~2,400 : 108</li> <li>2,400~4,000 : 120</li> <li>4,000~8,000 : 132</li> <li>8,000~40,000 : 145</li> <li>40,000~240,000 : 160</li> <li>240,000초과 : 176</li> </ul>	1.4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욕장 : 0.08</li> <li>음식점 : 0.55</li> <li>안마시술소 : 0.15</li> <li>실내수영장 : 0.07</li> <li>의료시설 : 0.34</li> <li>체육관 : 0.67</li> <li>업무시설 : 1.00</li> <li>숙박시설 : 0.38</li> <li>대형점 : 1.00</li> <li>특수목욕장 : 0.20</li> <li>영화관 : 1.29</li> <li>운수시설 : 0.67</li> <li>관광휴게 : 0.85</li> <li>기타시설 : 0.8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시 : 2.07</li> <li>광역시 : 1.00</li> <li>도청소재지 : 0.68</li> <li>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 0.67</li> <li>기타지역 : 0.57</li> </ul>
		* 단위 : 톤			

- 용수사용량 : 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 기준 산정

⇒ 계측기 미설치 및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한 산정불가시: 용수사용량 관리기록부 등에 의거 산정

⇒ 위의 방법에 의한 산정불가시: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 적용산정(시행규칙 별표5)

○ 부과예시: 서울특별시소재 바닥면적 160㎡ 시설물

(단위: 원)

구분	음식점	체육관	업무시설	목욕탕
계	170,338	90,268	36,647	321,307
대기	39,925	18,661	9,797	212,096
수질	130,413	71,607	26,850	109,211

<음식점의 경우>

- 대기: 연료사용량(1,320ℓ: 저유황 0.2~0.4%) = 표준연료사용량(8.25ℓ/㎡) × 바닥면적(160㎡)

⇒ 39,925원 = (1,000ℓ × 13원/ℓ × 1.466 × 1 × 1.53) + (320ℓ × 15원/ℓ × 1.466 × 1 × 1.53)

- 수질: 용수사용량(921.6톤/㎡) = 표준용수사용량

(5.76톤/㎡) × 바닥면적(160㎡)

⇒ 130,413원 = (400톤 × 79원/톤 × 1.466 × 0.55 × 2.07) + (400톤 × 87원/톤 × 1.466 × 0.55 × 2.07) + (121톤 × 97원/톤 × 1.466 × 0.55 × 2.07)

□ 자동차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 기준)	차령계수 × (차령노후정도)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 1.466			
			<엔진배기량(CC)> • 2,000이하: 1.00 • 2,000~2,500: 1.25 • 2,500~3,500: 1.75 • 3,500~6,500: 2.64 • 6,500~10,000: 4.50 • 10,000이상: 5.00	• 1년미만: 1.00 • 1~2: 1.02 • 2~3: 1.04 • 3~4: 1.06 • 4~5: 1.08 • 5~6: 1.10 • 6~7: 1.12 • 7~8: 1.14 • 8이상: 1.16	• 특별시: 1.53 • 광역시: 1.00 • 도청소재지: 0.97 • 시지역: 0.79 • 기타지역: 0.40

○ 부과예시(차령 3년이상 4년미만)

(단위: 원)

배기량(cc)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2000이하	48,140	31,460	30,520	24,850	12,580
2500이하	60,180	39,330	38,150	31,070	15,730
3500이하	84,250	55,060	53,410	43,500	22,020
6500이하	127,100	83,070	80,580	65,620	33,230
10000이하	216,650	141,600	137,350	111,860	56,640
10001이상	240,720	157,330	152,610	124,290	62,930

- 배기량 2000cc 이하 기준

- 특별시: 20,250 × 1.466 × 1 × 1.06 × 1.53 = 45,870원
- 광역시: 20,250 × 1.466 × 1 × 1.06 × 1.00 = 29,980원
- 도청소재지: 20,250 × 1.466 × 1 × 1.06 × 0.97 = 29,080원
- 시지역: 20,250 × 1.466 × 1 × 1.06 × 0.79 = 23,680원
- 기타지역: 20,250 × 1.466 × 1 × 1.06 × 0.40 = 11,990원